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효율적인 중장기 관세정책 및 제도 기획을 위해 세제실 관세제도과장은 관세평가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, 관세협력과장은 분장사무에 편익관세 업무를 명문화하여 분장하고, 산업관세과장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,

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계약·조달·국유재산이 강조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국고국 하부조직의 직제순서와 부서명칭을 변경하고, 출자관리과장 분장사무에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명확화하여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4. 00. ~ 4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(중전의 제6호) 중 “덤핑방지관세제도”를 “관세평가 제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5항제10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, 제5호, 제5호, 제6호, 제6호, 제7호, 제7호, 제8호,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6호, 제7호, 제6호, 제8호, 제5호, 제9호, 제5호, 제7호, 제10호 및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관세평가”를 “편익관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.

4.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·입안 및 운용

제14조제2항 중 “국고과·국채과·국유재산정책과·국유재산조정과·출자관리과 및 계약제도과”를 “국고과·국유재산정책과·계약정책과·국채과·국유재산조정과 및 출자관리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, 제5항, 제6항,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, 제4항, 제7항, 제8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제6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8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계약제도과장”을 “계약정

책과장”으로 한다.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6. 정부세외수입 수납 관리 및 점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세제실) ① ~ ⑬ (생 략)	제11조(세제실) ① ~ ⑬ (현행과 같음)
⑭ 관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⑭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6. <u>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 ·</u> 입안 및 운용	5. <u>관세평가 제도</u> ----- --
7. ~ 13. (생 략)	7. ~ 13. (현행과 같음)
⑮ 산업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⑮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<u>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 ·</u> <u>입안 및 운용</u>
4. ~ 8. (생 략)	6. ~ 10. (현행 제4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)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관세평가</u> 제도의 기획 · 입안 및 운용	6. <u>편익관세</u> ----- --
6. (생 략)	5. (현행 제6호와 같음)
7. (생 략)	5. (현행 제7호와 같음)
8. ~ 14. (생 략)	7. ~ 13. (현행 제8호부터 제14 호까지와 같음)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국고국) ① (생략)	제14조(국고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고국에 <u>국고과·국채과·국유재산정책과·국유재산조정과·출자관리과 및 계약제도과</u> 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<u>국고과·국유재산정책과·계약정책과·국채과·국유재산조정과 및 출자관리과</u>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
⑤ (생략)	④ (현행 제5항과 같음)
⑥ (생략)	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⑦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⑧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6. <u>정부세외수입 수납 관리 및 점검</u>
6. ~ 17. (생략)	7. ~ 18. (현행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)
⑧ <u>계약제도과</u>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⑤ <u>계약정책과</u> 장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